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한국문화원 설치 근거조항 신설 등 〉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549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한국문화원 설치 근거조항 신설 등(안 제12조의2신설 등) ..... | 2  |
| ※ 참고자료 .....                              | 1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8. 12.

다. 회 부 일 : 2026. 8.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한국문화원 설치 근거조항 신설 등(안 제12조의2신설 등)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외국과의 문화교류·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 등을 한국문화원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2조의2(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에 한국문화원(이하 “한국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br>②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br>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신 설> | 제12조의3(한국문화원의 기능) 한국문화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br>1.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br>2. 외국과의 문화교류<br>3.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br>4. 해외 문화정보의 수집 및 보고<br>5.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br>6.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재외공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br>7. 그 밖에 해외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현재 정부는 총 30개국 35개소의 한국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은 해외에서 한국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 한국문화원 운영 현황 ]

| 아시아/태평양                                                                                                                                                                                                                                    | 미주                                                                                                                                                         | 유럽                                                                                                                                                                                                             | 중동/아프리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li> <li>· 인도</li> <li>· 인도네시아</li> <li>· 일본-도쿄</li> <li>· 일본-오사카</li> <li>· 중국-베이징</li> <li>· 중국-상하이</li> <li>· 중국-홍콩</li> <li>· 태국</li> <li>· 필리핀</li> <li>· 카자흐스탄</li> <li>· 호주</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뉴욕</li> <li>· 미국-LA</li> <li>· 미국-워싱턴</li> <li>· 멕시코</li> <li>· 브라질</li> <li>· 아르헨티나</li> <li>· 캐나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li> <li>· 러시아</li> <li>· 벨기에</li> <li>· 스웨덴</li> <li>· 스페인</li> <li>· 영국</li> <li>· 오스트리아</li> <li>· 이탈리아</li> <li>· 폴란드</li> <li>· 프랑스</li> <li>· 헝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지리아</li> <li>· 남아공</li> <li>· 아랍에미리트</li> <li>· 이집트</li> <li>· 튀르키예공화국</li> </ul> |
| 9개국 12개소                                                                                                                                                                                                                                   | 5개국 7개소                                                                                                                                                    | 11개국 11개소                                                                                                                                                                                                      | 5개국 5개소                                                                                                                      |
| 30개국 35개소                                                                                                                                                                                                                                  |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sup>1)</sup>는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55조(문화원)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관에 문화원을 둘 수 있다.

② 문화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으로 보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문화원 설치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예산 등 운영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홍보 분야의 주재관인 원장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평가, 문화원 운영에 대한 지원·협의 및 문화원의 국가홍보활동 지원 및 평가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규정<sup>2)</sup>하고 있으며,

문화원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사업비·행정직원 인건비·경상비 용도로 2026년 기준 1,434억원이 편성되어 외교부가 지급하고 있는 문화홍보 주재관 인건비를 제외한 문화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sup>3)</sup>.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문화원장의 임명<sup>4)</sup> 등 조직관리는 외교부가 담

2)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1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문화미디어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48.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제13조(국민소통실) ① 국민소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7.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의 국가홍보활동 지원 및 평가(주재관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제외한다)

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4) 문화원장 선발은 외교부가 주체가 되어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관계부처 공무원 중 직위공모의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음.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

당하는 반면, 문화원의 사업·예산, 문화원 행정직원 채용 및 인사 등 실질적인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러한 이원화된 운영체제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원장 선발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기 어려워, 문화원장으로 문화행정 및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한국문화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이원화된 조직·운영체계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여 문화원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

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의 범위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부 소속 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 현행 및 개정안 비교 ]

| 구 분          |         | 현 행                        | 개 정 안            |
|--------------|---------|----------------------------|------------------|
| 설립근거         |         | 외교부 직제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
| 법적지위         |         | 외교공관                       | -                |
| 조직운영·인력운영 근거 |         | 외교부 직제시행규칙<br>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 국제문화교류진흥법<br>시행령 |
| 기관장 선발주체     |         | 외교부                        | 문체부              |
| 기관장 외 인력운영   |         | 문체부                        |                  |
| 예산<br>지원     | 기관장 인건비 | 외교부                        | 문체부              |
|              | 사업비     | 문체부                        |                  |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산업의 개념을 기존 문화창조산업 뿐만 아니라 푸드·뷰티·패션 등의 영역까지 확장하여 K-컬처를 수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고, 이에 한국문화원을 단순한 해외 문화홍보를 넘어 K-컬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그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sup>5)</sup>에서, 한국문화원의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5)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에 대한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재외한국문화원을 해외문화거점으로 삼아 K-문화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 자료: 「2026년,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게 한다」, p.3.,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12.16.

또한, 외국에서 국가의 특정 정책목적(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한국문화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한국교육원은, 한국문화원과 달리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에 한국교육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sup>6)</sup>에 설치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있고, 한국교육원장도 동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문화원 역시 한국교육원과 같이 개별 법률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6)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교원·직원의 임용 등) ①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수의 100분의 50까지는 교육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보할 수 있다.

## [ 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비교 ]

| 구분         |         | 한국문화원                       | 한국교육원                               |
|------------|---------|-----------------------------|-------------------------------------|
| 설치목적       |         |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를 위하여 |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
| 설치근거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소속         |         | 외교부                         | 교육부                                 |
| 기관장 선발     |         | 외교부 <sup>7)</sup>           | 교육부                                 |
| 기관장 외 인력운영 |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 예산지원       | 기관장 인건비 | 외교부                         | 교육부                                 |
|            | 사업비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다만, 개정안 논의 시 현행 재외공관 운영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정부조직법」

- 7) 외교부는 문화원의 주재관을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직위공모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재 문화홍보분야 주재관 총 42명 중 타부처 19명(민간 3명 포함), 문체부 23명으로 타부처 비율은 45.2%임.

\*관련 법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3조(주재관의 선발·임용)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외교통상 업무 및 영사 업무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부 각 부·처·청·위원회 등(이하 “관계부처”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의 업무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 내용 및 직무수행 요건 등을 정하여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 중 주재관을 직위공모 방식에 따라 선발한다.

제4조<sup>8)</sup>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부속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각 부처의 직제에 규정<sup>9)</sup>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처럼 현행법에 한국문화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등 현재 문화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또한, 현재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기관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대부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다른 부처에서 별도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현재의 재외공관 중심의 해외 파견기관·인력 운용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결국 개정안은 한국문화원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행 해외 파견기관·인력 관련 운영체계 등 현행 법체계를 재정립<sup>10)</sup>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8) 「정부조직법」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직제)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9) 동 조항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원의 대통령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것임.

1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등 개정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문화원의 설치·운영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될 경우 이원화된 조직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문화원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되, 한국문화원의 설치 및 소속 변경은 정부 조직체계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외교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 조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의 해외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외에 파견되는 기관 및 인력을 재외공관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해외조직 운영방침에 배치되고, 오히려 K-문화확산·홍보업무의 분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는 한국문화원의 설치·기능 등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본다.”는 부

책을 두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해외문화홍보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376 |

## 참고 1

## 타 부처 의견

| 부처명<br>(의견제출일자)      | 의견 주요내용                                                                                                                                                                                                                                                                                                                                                                                                                                                                                                                                                                                                                          |
|----------------------|----------------------------------------------------------------------------------------------------------------------------------------------------------------------------------------------------------------------------------------------------------------------------------------------------------------------------------------------------------------------------------------------------------------------------------------------------------------------------------------------------------------------------------------------------------------------------------------------------------------------------------|
| 외교부<br>(2026.8.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법령은 ▲재외공관의 일부로서 문화원 설치 및 ▲문화원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외교부장관의 권한 사항임을 명시함</li> <li>-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외공관에 문화원을 설치(「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li> <li>- 외교부장관은 쉰 부처 공모제에 따라 주재관 선발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문화홍보 분야 주재관 직위를 갖는 문화원장 선발·임용(「외무공무원법」 및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li> <li>• 아울러, 문체부장관이 별도의 해외 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외 파견 기관·인력을 재외공관 중심으로 통합하고,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배치됨</li> <li>• 따라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상 조항 신설(문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문화원 설치·운영) 등 일부개정은 통일성 있고 조율된 대외정책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기 현행 법령의 제도적 취지에 상충되며, 오히려 문화 확산 및 홍보업무의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는바, 동 개정예에 반대함</li> </ul> |
| 행정안전부<br>(2026.9.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정부조직 법령에 따르면 문화원 설치·임명 권한(외교부 직제 제55조) 등에 관한사항은 외교부 소관사항임</li> <li>• 이에, 한국문화원의 설치·기능 등을 문체부 소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은 관계 기관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li> </ul>                                                                                                                                                                                                                                                                                                                                                                                                                |

| 법률명<br>(법률번호)                               | 조문내용(조항)                                                                                                                                                                                                                                                                                                                                                                                                                                                                                                                                                  |
|---------------------------------------------|-----------------------------------------------------------------------------------------------------------------------------------------------------------------------------------------------------------------------------------------------------------------------------------------------------------------------------------------------------------------------------------------------------------------------------------------------------------------------------------------------------------------------------------------------------------|
| 「재외국민의<br>교육지원 등에 관한<br>법률」<br>(법률 제21013호) | <p><b>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b> ①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외국에 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교육원에는 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원의 설치기준·운영 및 원장·교원·직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9조(교육원의 기능)</b> 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어 등의 보급</li> <li>2.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li> <li>3.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li> <li>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li> <li>5.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li> <li>6.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